

영등포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10.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7호로 2015년 10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양평2동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변경)】

보육인프라 확충 및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2014년 관리계획 변경 의결 받았으나 당초 설치예정지의 매물이 회수되어 대체 부지를 선정 매입하고자 함.

【대림3동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변경)】

대림3동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민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5년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당초 설치예정지의 매물이 회수되어 대체 부지를 선정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자 함.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 변경내역

○ 양평2동 국공립어린이집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사업시기	보육 정원 (명)
	지목	소 재 지	토지면적	건물면적			
종전	대지	양평로28바길18	157㎡	300㎡	1,600,000	-	53
변경	대지	양평로30가길15 (동양A 101동106호)	9,774.6분의 48.75㎡	114.49㎡	580,000	2015.10월 ~ 2015.12월	20

○ 대림3동 국공립어린이집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사업시기	보육 정원 (명)
	지목	소 재 지	토지면적	건물면적			
종전	대지	가마산로31길 26-1	199㎡	300㎡	1,667,000	-	58
변경	대지	도림로39길11-13	261.2㎡	441.16㎡	2,419,000	2015.7월 ~ 2016.7월	100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양평2동과 대림3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진출과 저 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양평2동 어린이집은 총 5억 8천만 원 중 시비는 4억 6천 4백만 원 구비는 1억 1천6백만 원이고, 시비는 2015년도 예산(사고이월비)으로 확보된 상태이며, 구비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1)되어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재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바,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 구비 1억 1천6백만원 중 1억 5백만원은 추경(시설비 9천5백만원, 기자재 구입비 1천만원)으로 확보하였고 1천1백만원은 기 확보된 예산임.

- 대림3동 어린이집은 총 24억 1천9백만 원 중 시비는 19억 3천5백만 원 구비는 4억 8천4백만 원이고, 시비는 2015년도 예산(명시이월비)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구비는 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